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8.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4일, 맹성규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2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4.16.)

상정・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7.21.)

상정・소위 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맹성규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0%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열섬현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환경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도 실감할 수 있었음.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조건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공원 평가 실시(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평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현행 제 4호와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기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1]은 도시·군관리계획[2]으로 결정되는 공원으로,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가 공원조성계획[3]에 따라 설치·관리[4]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되 평가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등에게 도시공원 대장[5]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

---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도시공원 대장)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록 하는 내용임.

도시·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권자[6]는 시장·군수등으로, 도시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 관리함에 따라 도시공원의 품질 및 조성행태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7]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 및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해 평가하고 도시공원 대장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시공원 관리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그 작성·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조성관리가 자치사무[8]로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원 조성면적 및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등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도시공원은 기존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므로 도시공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8)「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및 제10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신 설>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

현 행	개 정 안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4조의2는 전국 공원녹지[9]의 확충, 현행법 제25조의2[10]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지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등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법 제5조[11]에서는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을 위해 10년 단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10)「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수립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공원녹지 확충 계획 추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도시공원 및 도시공원 조성, 도시녹화사업 등에 대한 시범사업[12]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공원녹지에 대한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어 전국 공원녹지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 현황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현재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13]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적인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계획이 부재하여 일시적·단편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원녹지에 관한 통일된 정보체계가 필요하므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 등 시범사업(제3조), 국가도시공원 지정(제25조의2), 도시공원사업 비용 보조(제44조) 등

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안 제2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 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 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제49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25조의2[14]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①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15]를 거치도록 하고, ②현행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면적인 300만 제곱미터를 10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며, ③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예산 지원 범위를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려는 것임.

【 제25조의2 개정 관련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① 지정절차	1.관계 부처 협의	1.관계 부처 협의
	2.**국무회의 심의**	2.**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
② 지정요건	1.부지면적 **300만㎡ 이상**	1.부지면적 **100만㎡ 이상**
	2.부지 **전체 소유권 확보**	2.부지 **전체 소유권 확보**
③ 예산지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1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520)
제49조의2(국가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현행법 시행령 별표 1의2) 】

구 분	지 정 요 건
1. 도시공원 부지	가.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것
2. 운영 및 관리	가.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 나.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 나목의 조직에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라.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3. 공원시설	가.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공원으로, 2016년 현행법 개정[16]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없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국가정원[17]의 경우

16)법률 제1408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6.3.22. 일부개정, 2016.9.23. 시행

17)「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8] 상 면적을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령 상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도시공원 면적 요건이 300만제곱미터[19]로 높게 규정되어 있어 지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8)「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1. 국가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준
가. 정원	1) 정원의 총면적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역사적·향토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하 "녹지면적"이라 한다)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5개 이상 포함할 것

19)전국 300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현황

구분	지역	공원명	면적(㎡)	비고
1	서울	서울대공원	6,670,000	과천 소재
2	부산	어린이대공원	3,597,055	
3		중앙공원	3,519,616	
4		가덕공원	4,879,216	
5		불광산공원	4,931,044	
6	대구	앞산공원	3,531,398	
7	광주	중앙근린공원	3,020,000	
8	세종	전월산근린공원	3,012,577	
9		원수산근린공원	3,659,248	
10	전주	덕진공원	3,558,640	
11	순천	봉화산공원	4,934,266	
12	창원	팔룡공원	3,555,855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과 같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면적 기준을 100만제곱미터로 완화하는 것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또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 역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여 지정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규칙 상 광역권근린공원의 규모 기준인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요건을 하향하여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지정요건에 면적 요건은 제외하고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규모 기준(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3)】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 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 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 제곱미터 이상**

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안 제4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2(국가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49조의2는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국가도시공원 및 시범사업 지정 등 공원녹지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현행법 제50조[20]에서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군도시공원위원회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에 대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어, 국가도시공원위원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공원녹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여 국가 차원의 국가도시공원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맹성규의원, 이성권의원, 권영진의원 및 윤영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